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7436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74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79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박영빈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79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50,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복합판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축물 내외장재 단열재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부터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2015. 5. 6.까지 83,029,614원의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대표 D는 2015. 7. 2. 원고에게 83,029,614원의 외상대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할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원)

변제계획	변제일자		변제금액
	1회 변제일	2015. 7. 31.	20,000,000
	2회 변제일	2015. 8. 31.	20,000,000
	3회 변제일부터	2015. 9. 30.	매월 2,000,000씩 22회
	24회 변제일까지	2017. 6. 31.까지	합계 44,000,000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최종지급기일인 2017. 6.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8,879,548원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지급일	지급금액
1	2015. 8. 28.	5,000,000
2	2015. 11. 30.	11,365,970
3	2015. 12. 29.	12,513,578
		28,879,548

마. 피고는 2017. 7. 1. 이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지급일	지급금액
1	2019. 3. 19.	400,000
2	2020. 1. 13.	400,000
3	2020. 3. 11.	200,000
4	2022. 5. 15.	500,000
5	2022. 6. 15.	200,000
		1,7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외상대금 54,150,066원(기존 외상대금 83,029,614원 - 피고가 2015. 12. 29.까지 지급한 돈 28,879,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9. 3. 19.부터 2022. 6.

15.까지 1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2017. 7. 1.부터 2018. 1. 7.까지 191일간 발생한 지연이자 1,700,163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금 54,150,066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후인 2018. 1. 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로 소멸하였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15. 5. 6.까지 발생한 83,029,614원의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2015. 8. 28.부터 2015. 12. 29.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879,548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9. 3. 19.부터 2022. 6. 15.까지 5회에 걸쳐 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위 돈이 원본과 2017. 7. 1.부터 2018. 1. 7.까지 발생한 이자¹⁾에 각 충당되었음을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잔존 외상대금 54,150,066원(= 83,029,614원 - 28,879,548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각서상 최종지급기일인 2017. 6. 31. 기한이 도래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되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6. 2.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3조 제1항),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이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종성이 부정된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주채권인 이 사건 채권과 부종성이 부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5. 4. 30. 폐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그 후 2015. 7. 2. 이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여부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의 의사가 이 사건 회사 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무한정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D가 피고와 부모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의 법인격이 다른 이상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2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7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 금액인 약 5,4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④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재산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실효케 하는 제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명희, 판사 손정현, 판사 권 겸

1) 1,700,163원(= 54,150,066원 × 191/365 × 0.06)